

##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<b>제33조 (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</b>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 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.</p>	<p><b>제33조 (청약의 철회)</b> ①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6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. ② 제 1 항에 따라 고객은 해당 리스계약에 따른 자동 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, 자동 차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 니다.</p>	<p>금소법 상 청약철회권 내용 반영</p>
<p>&lt; 신설 &gt;</p>	<p><b>제 34 조 (위법계약 해지)</b> ① 채무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 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	<p>금소법 상 위법계약 해지 내용 반영</p>
<p>&lt; 신설 &gt;</p>	<p><b>제 35 조 (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</b>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 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.</p>	<p>조 내림</p>